

# 제 안 설 명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상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회무시와 회의질서 파괴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의회 회의장 내 질서유지 조항 강화와 의회민주주의 위상제고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시는 입법권 남용에 의한 단체장 권한 제약이라는 이유를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본 의원과 11명의 공동발의 의원들은 당시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민주적 절차 준수와 의회 존중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과 협치를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안정에 전념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등 주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제2항)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 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22조의2)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발의를 하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제33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도시안전 건설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 (제37조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구성안 심의시 반드시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 또는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37조제9항) 활동기간 연장을 1회, 6개월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39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제48조의2) 정책지원관 배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소관업무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 (제52조)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과 교육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발언 허가 및 중지, 퇴장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